##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약칭: 주류면허법 시행규칙)



[시행 2024. 3. 22.] [기획재정부령 제1050호, 2024. 3. 22., 일부개정]

기획재정부 (환경에너지세제과) 044-215-4333, 4336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)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4조제1항,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,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"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별표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말한다.
- 제3조(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) 영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말한다.
  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  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)
  -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  - 4.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7조에 따른 주류업단체
  - 5. 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17조에 따른 단체
- **제4조(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)**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 - 1. 주류 제조 위탁자(합병・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- 2.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용 주류를 구입하는 자
- **제5조(면세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)**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(이하 "주류판매업자"라 한다)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15조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빈병 등의 용기를 회수하여 해당주류를 반출한 주류 제조자에게 반환해야 한다.
  - ② 주류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물건을 검사한 결과 주류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빈병 등용기의 회수 및 반환을 소홀히 하여 면세주류의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에 반입되지 않은 주류에 대하여 「주세법 시행령」제21조제1항에 따른 면세주류 구입승인을 취소하고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.
- 제6조(직매장 설치허가 신청)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매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영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제7조(주류 가격 신고)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제조·판매원가 계산서 및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2. 3. 18.>
- **제8조(주류 제조 원료)** 영 제29조에 따른 주류 제조 원료에는 주류 제조 원료용 주류와 주류 제조용 주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.
- 제9조(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)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"란 다음 각 호의 주류를 말한다. 다만, 주류 제조 원료로 반출하는 경우와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22. 3. 18.>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탁주 · 약주
- 2. 청주
- 3. 맥주
- 4. 과실주
- 5. 소주
- 6. 위스키
- 7. 브랜디
- 8. 일반증류주
- 9. 리큐르
- 10. 기타 주류

**제9조의2(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)**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록부에 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2. 3. 18.]

**제10조(끝수의 처리)** 영 제34조에 따라 주류의 수량을 검정하는 경우 용기당 수량에서 리터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.

제11조(수수료)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면허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- 1.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: 5만원
- 2.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: 5만원
- 3.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  - 가. 영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·특정주류도매업·주정도매업·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: 5만원
  - 나.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: 3만원
  - 다.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: 3만원

제12조(서식)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의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2. 3. 18.>

- 1. 영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및 밑술ㆍ술덧 제조면허 신청서: 별지 제3호서식
- 2.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신청서: 별지 제4호서식
- 3.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 위탁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: 별지 제5호서식
- 4. 영 제8조제3항·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및 의제 주류 판매업면허 신고서: 별지 제 6호서식
- 5. 영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장 판매장 이전신고서 및 이전허가 신청서: 별지 제7호서식
- 5의2. 영 제24조에 따른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: 별지 제7호의2서식
- 6. 영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: 별지 제8호서식
- 7. 영 제38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: 별지 제9호서식

부칙 <제1050호,2024. 3. 2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